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 20.(월) 14:33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3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2020년도 제1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송통신 업계의 활력 도모와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셔서 이에 일정을 당겨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20-03-004)**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변경허가에 대해 본 안건의 <첨부>와 같이 변경허가 조건을 추가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의 합병을 위한 SO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방송법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내용입니다. 변경 전에 IPTV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 SO인 (주)티브로드,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합병함으로써 변경 후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가 존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개요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사항은 기 보고드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심사위원회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총 9인의 심사위원회로 구성되었고,

2박 3일간 합숙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의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적책임 등에 대해 사업자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내용입니다. 평가점수는 총 1,000점 만점 중 749.67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총평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할 때, 이종(異種)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고, 합병을 통해 신규콘텐츠 투자, 설비 개선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침체되어 있는 SO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전국사업자이자 고가 상품 위주의 IPTV가 SO를 합병함으로써 지역성 저하 또는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며,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및 채널거래시장에서의 거래관계, 또는 합병법인의 인력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병을 위한 SO 변경허가에는 동의하되, 합병 이전보다 공적책임·지역성·공익성 등의 이행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공정경쟁 질서 준수 및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조건 등을 부가 또는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부가 조건(안)입니다. 첫 번째, 공적책임 제고 및 경영투명성 확보 유도입니다. 본 건이 IPTV를 운영하는 통신대기업에 의한 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병법인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방송부문에서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내용은 합병법인이 자율적으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미디어 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 지원, 지역인력 고용 등 지역성 책무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 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 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자는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증대만을 위한 합병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방송시장의 공적책임 제고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성 훼손가능성 차단입니다. 피합병법인인 티브로드는 총 12개의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정보 및 지역문화를 제공·전파하는 등 지역사업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사업자인 SKB와의 합병 후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한 지역채널 권역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역선거방송 등 보도 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상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기존의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을 더 이상 광역화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합병법인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유료방송 역무별 분리·독립 운영 방안을 최소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자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지역사업권자로서 합병법인이 지역방송,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사업자의 지역사업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성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나아가, 권고사항을 통해 합병법인이 자신의 방송권역 내 지역 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대효과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관련사항입니다. 크게 가입자 전환 관련된 내용과 PP 거래 조건 관련된 내용 2가지입니다. 가입자 전환 관련해서는 포화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플랫폼 간 결합은 ARPU가 비교적 낮은 SO 가입자를 궁극적으로는 ARPU가 높은 IPTV로 부당하게 전환시키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부당한 가입자 전환은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시장에서 경쟁하는 여타 경쟁사와의 거래질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건으로 합병법인이 합병법인 내 SO와 IPTV 부문 간 가입자 전환 규모와 그 비율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규제로 부당한 가입자 전환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관련 행위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PP와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간 결합으로 인한 규모 확대에 따라, 합병법인이 일반PP 및 홈쇼핑PP와의 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요구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는 배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조건은 합병법인이 PP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출할 때 PP의 의견이 실제 반영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PP프로그램 사용료 등 홈쇼핑 송출 수수료 지급·수입 규모 외에도 각각의 수신료 매출액 대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평가자인 PP의 의견이 평가기준 등에 실제 반영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계약과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또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각각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 합병법인에만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멸 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합병 당사자의 방송지역 중 일부 도서 산간 지역 등에 방송 음영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조건으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인 SO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사명 변경 등 합병으로 발생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시청자위원회를 기존과 같이 역무별로 분리하여 운영하되 격월로 운영하여 실효성을 제공한다는 내용, 그리고 커버리지 확대 계획 및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부과하고자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아날로그 상품 수준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로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흡수합병에 따른 시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함에 동시에, 기존의 시청자 권익이 유지 또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커버리지 확대 유도 조건 또는 다양한 상품 판매 권고를 통해 농·어촌 지역 시청자 및 사회경제적 약자 등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로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관련 사항입니다. 합병법인이 기 제출한 콘텐츠투자 계획은 SKT가 최대주주로 있는 WAVVE에 대한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은 합병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에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출할 때, 합병법인의 자체콘텐츠 투자와 콘텐츠 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를 구분하고,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도록 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고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부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계약관계에서의 연락처 유도입니다. M&A의 특성상 합병법인 내부의 인력 운용 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다소 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건 내용으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합병 후 잉여인력 재배치 계획, 임금 조정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할 때 해당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법인이 내부 인력 운용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의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안정화에도 합병

법인이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조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조건(안)은 합병법인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합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청권 보호를 위한 조건 중 시청자위원회를 격월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은 다른 SO와의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방송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조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비상장회사인 SKB에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관련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첨부>표와 같이 심사위원회 조건(안) 중에서 시청자위원회 개최 빈도 관련 조건은 삭제하고, 사외이사 임명 관련 조건은 권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장애인방송 관련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적책임 제고 조건의 예시로 '장애인방송 제공 확대'를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사전동의 여부를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건(안) 및 수용여부 관련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공적책임 제고 관련된 내용은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포함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아까 종합 의견에서 말씀드렸던 '장애인방송 제공 확대'도 예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투명성 확보 관련된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고려하여 권고사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지역성 관련된 내용과 공정경쟁 유도 부분들은 일부 문구를 추가하여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된 내용에서 '시청자위원회'를 격월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격월로' 부분을 삭제하고, 콘텐츠 투자 유도나 인력운영/협력업체 상생 방안 등은 수용하는 것으로 안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앞서 보셨던 사외이사 부분을 추가하고, 지역방송,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구축하는 부분에 '지역 내 시청자미디어 센터'를 추가하여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욱 상임위원

- 이번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합병을 위한 SO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와 사전동의 조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동의 심사의 목표는 최대한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능한 신속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의결할 때부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 30일 과기정통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한지 15일 만에 매우 신속하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무처의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티브로드와 SKB가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합병 인허가 신청을 한 것이 작년 5월 9일입니다. 이후 방통위는 작년 7월에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11월에 심사계획(안)을 마련하면서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심사기준 등을 세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어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 직후에 바로 심사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번 합병이 방송시장과 시청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 신년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첫 순서로 잡힌 날짜와 사전동의 심사일정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일정을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했습니다. 합병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합병법인이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는 SO사업자와 IPTV사업자 간 최초 합병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재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격리된 장소에서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집중 심사를 하면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 전문가 진술을 들었습니다. 또한 존속법인인 SKB와 최대주주인 SKT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소멸 예정 법인인 티브로드의 대표자 및 편성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사업자의 구체적 실천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역점을 둔 것은 합병의 시너지를 최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미디어 환경의 급변과 현재 SO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케이블TV와 IPTV의 이중플랫폼 간 합병을 통해 신규 콘텐츠 투자와 상품의 다양화, 설비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침체된 SO 시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통신대기업의 계열사이자 전국사업자인 IPTV가 SO를 합병함으로써 지역성의 저하나 시청자 권익침해, 공정경쟁 거래질서 훼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첫째 공적책임의 제고, 둘째 지역성 훼손 가능성의 차단, 셋째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넷째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다섯째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여섯째 내부 인력의 운영 및 협력업체 계약에서의 상생 도모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사전동의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점수로 심사를 평가한 결과, 보고받은 대로 티브로드는 1,000점 만점 중 749.67점을 획득해서 650점을 통과하였습니다. 보고받은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성 훼손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합병법인인 SKB가 기존에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12개 지역채널을 더 광역화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는 지역정보 및 문화전파의 창구 역할인 지역채널의 대상지역이 넓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합병 후에도 그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SO 가입자를 IPTV로 부당하게 전환시킴으로써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병법인이 SO 부분으로부터 IPTV 부분으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규모 및 비율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가입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전환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환의 추이를 통해서 플랫폼 간 부당한 가입자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자의 그러한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권익이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합병 이후에도 SO, IPTV 각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고,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 계획 및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수준 이상으로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권고사항 가운데 첫째는 합병법인이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당초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SKB가 비상장회사이고, 상법상 사외이사를 둘 의무가 없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방통위는 이를 권고사항으로 재분류하는 등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심사위원장님을 맡으신 허 옥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합병의 사전동의가 절차상 사전동의에 그치지 않고 거의 본 심사 또 재허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특히 방송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성 강화나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잘해 주셨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사무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를 합병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런 공적인 책임이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만, 어쨌든 합병법인이 앞으로 자율적으로 공적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미디어 교육이나 또 지역인력을 고용할 것 등을 예시한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적책임 강화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합병법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자세하게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역성 훼손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전국사업자인 SKB가 지역채널 권역을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를 이번에 불식시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선거방송에 지역SO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 관련 보도에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건에 달아서 선거방송심의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던 것도 매우 시의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또 공정방송 거래 질서 부분인데, SO 가입자를 IPTV에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좋은 조건을 달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고용불안에 방송종사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티브로드 SO에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고용 불안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느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합병 후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임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하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 조건을 다는 것이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특히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방송업체 종사자들 의견을 듣도록 한 것도 아주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달았다고 해서 쉽사리 부당해고나 고용불안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계속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합병을 놓고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케이블TV 단품 가입자가 가격이 높은 IPTV나 또는 결합상품을 갈아타도록 계속 전환을 유도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확장 활동이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밖에도 또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콘텐츠 제작비나 또 지역채널 활성화 등에 쓰여야 할 돈이 거의 가입자 확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경쟁업체 쪽에서 나온 걱정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사무처에서도 잘 들여다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종합적인 의견을 내면 많이 고생들 하셨고 잘 되었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 합병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꼼꼼하게 기준을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송통신 합병기준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 욱 심사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표철수 상임위원

- 저희가 사전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인데, 심사결과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상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허 욱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건으로 부가된 것 중에서 PP프로그램 사용료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지급 수입 규모 외에도 각각의 수신료 매출액 대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조건과 그다음에 합병법인의 자체 콘텐츠 투자와 또 콘텐츠 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를 구분하라, 그다음에 직접투자와 간접 투자를 구분하도록 하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일 형태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LGU+의 CJ헬로 주식 인수의 경우에는 이 합병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업자에게도 이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앞서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이런 조건들을 적용시킬 방안들이 따로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와 합병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방통위에서 전에 의견서도 과기정통부에 보낸 적이 있었고 그 부분은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CJ헬로와 LGU+의 인수의 경우 현행 법체계 내에서 소급해서 이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CJ헬로는 재허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허가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재허가 시점에 이런 부분들의 부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사업자에게는, 이것이 권고사항이 아니고 특히 조건 부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무진에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조건 내용들을 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재허가 전·후 과정에서도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 간 형평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정책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데 특히 콘텐츠 직접 투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후에도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말씀드립니다. 허 심사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였고, 사무처 꼼꼼하게 추가 보완조건을 달아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면 앞으로 합병되고 난 뒤에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해서 시청자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했을 때는 위원들이 다른 일반 SO 들은 반기별로 하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라고 제의한 것인지, 아니면 합병되고 난 뒤에 SO는 좀 더 책임을 강하게 하기 위해 두 달에 한 번씩 제의한 것인지 그 제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합병되고 난 뒤 SO와 차별화하여 좀 더 의무를 강화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격월로 한다는 것은 또 설득력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SO는 시청자위원회가 방송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회 종합의견으로 제시되어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은 판단을 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하시고, 모든 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행여부를 독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1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8. 폐 회

###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05분 폐회 】